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김성수 (Sung-Soo Kim)**

◁ 목 차 ▷

- | | |
|-----------------------------------|----------------------------|
| 1. 서론 | 3.3 <국가기록원>의 기능 및 위상 강화 방안 |
| 2. 기록의 기능 | |
| 3.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위상 문제 | 4.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
| 3.1 <국가기록원>의 위상의 현황 | 5. 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 문제 |
| 3.2 <국가기록원>의 위상의 개선 필요성 | 6. 결론 |
|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했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 / 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강창일·조성래·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국가기록관리의 성과와 개선방안」(2004. 11. 25,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제한 “기록관리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uyokss@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4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12월 15일

요어 : 기록관리법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위상 제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기록박물관 전시관의 설치.

<ABSTRACT>

This research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 for record management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in South Korea. Three major issues are: 1)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managing centrally records, 2) System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who specialize in record management, and 3) Foundation of the national museum and archives of record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National Office of Records'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managing records, should be promoted to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in order to be administered by the class of a vice-minister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econd, the qualification criteria which currently requires the Master's degree of Record Management, should be modified to include the Bachelor's degree in the field in order to expand the pool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lso, to hire the public officials for record management, either the positions of 'researcher/record manager group' should be created, or the existing positions of librarian, archivist, and record manager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new position of 'record culture group'.

Third, the most significant task for the office of recor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s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e and documentary legacy which are unique to those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t various levels, and a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ose tasks. Therefore, when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will be later revised,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record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at every level should be required, and the museum and archives of records should be also established as a significant part of the institution. Unique local culture and history of particular communities should be collected and preserved in systematically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ways in those institutions of record management, and the names should be uniquely given to the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Revision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System and Education for Developing Professional Workforce for Record Management, Establishment of the Museum and Archives of Records.

1. 서론

기록은 인간성의 향상과 인류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국가기록물의 관리는 국가의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를 위한 초석임에 틀림없다.

역사적으로 '기록의 나라'¹⁾라고 일컬어졌던 한국은 20세기에 들어와 일제강점기를 거치

면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기록물들은 모조리 불태우거나 파괴하였고, 현대사에 들어와서도 군사독재정부 하에서 또한 중요한 기록물일수록 고의적으로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근래의 기록에 대한 위와 같은 관습적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도 해당 기록물의 소중함을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기록들이 무수히 많다.

그리하여 1999년에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1999.1.29., 법률 제5,709호; 이하 ‘기록관리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올해인 2004년도에 와서야 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이 법을 비롯하여 그 시행령 등도 시기적절하지 못하여, 시급하게 개정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현황에 와 있다.

- * 국가의 기록이 방치되고, 역사의 흔적이 지워지면서 과거 우리 민족의 찬란한 기록유산마저 퇴색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 *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기록유산의 정리와 보존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록유산들을 전승(傳承)시켜야 할 것인가?
- * 우리는 현재 과연 이러한 물음들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답하고 실제로 행동하여야 할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조성래·최규식 의원’이 국가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국가기록관리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논제에 대한 원활한 논술의 도입을 위하여 먼저 ‘기록의 기능’을 서술한 후,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큰 틀의 관점에서 기록관리 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즉,

-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의 위상문제
- 2)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 3) <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 문제

1) 우리에게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으로 지정된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직지심체요절」·「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삼국유사」·「삼국사기」·「비변사등록」·「난중일기」·「왕오천축국전」·「고려재조대장경」 등 세계문화사에서도 길이 찬란한 기록유산들이 수없이 많을 정도로, 한국은 실제로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의 관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기록관리법」의 바람직한 개정 및 우리나라 기록관리 환경 및 기틀의 개선방안에 일조(一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기록의 기능

현대사회에 들어와 인간은 합리화 내지 정보화를 추구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물질 토대 위에 모든 기록 즉 지식과 정보를 세계화 내지 국제화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식과 정보로 대변(代辯)되는 기록은, 현대의 각종 첨단시스템 및 정보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식정보로서의 기록정보자원이 급격하게 광역화·상품화·상대주의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록에 있어서 통일성 및 보편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른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기록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하여 기록의 다양성을 통일성과 보편성으로 연결시켜야 하고, 현대성에 대한 보완적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즉, 기록에 있어서 기술적 합리성이 실천적 합리성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²⁾

결과적으로 기록은 인간성의 향상 및 인류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여 왔고 또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록에 대한 정체성(正體性)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기록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권리 및 의무 관계의 규정)로서의 역할, 즉 일반재산권·지적(知的)재산권 등의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여, 기록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활동결과로 생산된 자료로서,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의 공익성과 역사성으로 인하여 1차자료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이 다른 어떤 자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적(公的) 기록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 모든 활동주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이 되고 있다(김태수 2002a, 8).

위와 같은 기록은 1) 정보전달·저장의 수단이며, 2) 공공기관 등에서의 업무의 수행 및

2)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장에 <자료관시스템>이 도입되고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 사이의 연계시험이 실시되면서 기록관리 각종 업무의 표준규격 등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증명의 수단이기도 하며, 3) 역사와 문화 전승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록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술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전달·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록은,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보존되고 기공된 기록만이 정보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은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 육성보다 영속적이고, 경험축적의 수단으로서 인간의 기억보다 영구적인 특징을 지닌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며 고급정보의 생산·저장·유통·활용이 개인의 성공과 국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대의 행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기록)의 생산과 유통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수단으로서의 기록은 수행할 업무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기록은 그것이 보존됨으로써 업무수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셋째, 역사와 문화 전승의 수단으로서의 기록은 역사서술의 자료이며 문화 전승의 수단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전승되며, 국가의 정당성과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현존하는 민족국가 중에서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즉 자기 역사를 지키지 못한 국가와 민족은 멸망하였다. 세상에 존재하였다가 멸망한 민족과 문명은, 그들이 기록과 유물을 남겼을 경우에만 역사 속에서 서술되고 있다.

기록은 인간의 기억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상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생산·수집한다. 이러한 기록은 일정기간 동안 그 목적에 종속된 가치를 지닌다. 쉘렌버그(T.S. Schellenberg)는 이것을 ‘일차적 가치(primary value)’라고 칭하였다. 이러한 일차적 가치는 작성된 목적에 따라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치이며, 법률적·행정적·재정적 가치를 포함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소멸되었으나, 그 기록이 제3자를 위한 폭넓은 이용의 가치가 있을 때 이것을 ‘이차적 가치(secondary value)’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차적 가치는 사실의 확인을 증빙하기 때문에 증거적(evidential)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최정태 2001, 42).

위와 같이 기록은 여러 포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가치에 수반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록의 기능을 대별하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

- ① 행정적 기능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이나 단체 등의 인사·경영·제정·법적 권리·긴급사태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된 기록

물은 국민생활의 편의와 권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록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② 법률적 기능 : 국민 개인이나 단체 등의 법적 권리 가족·재산·세무 관계 등을 증빙(등기 등)하는데 있어서 필요·충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사법적 견해나 법률적 해석을 포함한 기록물, 법적 행위와 관련된 기록물, 재산소유나 법적 의무 등에 증거가 되는 기록물은 영구보존의 가치와 기능을 지닌다(최정대 2001, 43 참고).
- ③ 역사적 기능 : 영구보존(永久保存)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들은, '기록관리(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등)'활동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축적되고, 축적된 기록물들은 후대(後代)의 주제전문가 또는 역사가 등에 의하여 정리됨으로써 각 주제 분야의 역사가 정립될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 과거의 사실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며 기록전문가의 손을 거쳐 일반에게 알려진다. 즉 역사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이 요구된다.
- ④ 문화적 기능 : 위 ①~③의 기능에 의거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각 지방 주민들의 의·식·주 및 사고(思考)와 관습이 형성됨으로써, 그 지방이나 국가의 고유(固有)한 문화가 성립되는 기능을 지닌다. 즉 기록관리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않고는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⑤ 연구적 기능 : 모든 기록물은 각 주제별로 연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기록관리의 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있는 기록물들을 판단하고 선별한 후, 이들 기록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³⁾

요컨대, 국가기록물을 비롯하여 우리의 기록행정 및 업무가 위와 같은 5가지 기능들을 완수할 때 비로소 한국의 기록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선진 기록문화의 창달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된다.

3) 예컨대, 오늘날 「승정원일기」나 「비변사등록」 등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훌륭한 상세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연구적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 문화재 복원공사에서 보존된 관련 기록물들을 연구·활용함으로써 그 복원에 완벽을 기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의 효과를 지닌다. 그 예로써 경복궁의 복원 당시 「북궐도면」·「궁궐지」·「조선고적도보」·「경복궁내 부지와 관저 배치도」 등의 기록물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또 활용된 사례가 있다.

3.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위상 문제

3.1 <국가기록원> 위상의 현황

현행 「기록관리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라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舊 정부기록보존소)>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삼대기관 중의 하나로서 그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록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각 호(號)에 명시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수행 업무’의 내용⁴⁾을 살펴보면, ‘① 국가 기록물관리의 기본정책의 결정 및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②~③ 국가기록물의 수집·지정 및 보존·활용’·‘⑥ 기록물관리업무의 지도·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록물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 총체적인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수행 업무는 행정부 내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에 제한되는 현상 및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기록관리법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및 국가의 중요한 특수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관련하여 「기록관리법」 제6조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정보원>·<육·해·공군의 군(軍)기관> 등 이른바 특수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그리하여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위와 같은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설치와

4) 「기록관리법」 제5조 2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및 제도의 개선
- ②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 ③ 국가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 ④ 기록물관리 기술 및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 ⑤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 ⑥ 기록물관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⑦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그 운영을 방만하게 나열함으로써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방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대폭 축소시킴과 함께 이 기관의 기능과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악조건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기록관리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행업무는 행정부 내에서만 생산되는 정부기록물들에 국한하여 수집·관리·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버린 결과를 낳고 말았다.⁶⁾ 이러한 요인과 결과로 인하여, 현재 <국가기록원>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⁷⁾ 즉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 전체의 기록물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지시·감독 및 통정(統整; 統制 및 調整)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⁸⁾

위와 같은 <구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
- 5) 이 조항의 의미는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그 기관 내에 별도의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6) 이는 결국 현재처럼 행정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만을 국한하여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1/3도 채 아니 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7) 왜냐하면, 삼부(三府) 즉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기록물들이 남김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함께 수집·관리·보존될 때 비로소, “한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록물을 관장(管掌)하는 기관”이라고 올바르게 이 기관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중요기록물들은, 그 원본은 해당기관에 영구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된 복본(複本)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반드시 이관되어야 하며, 또 유사시를 대비하여 ‘중요한 국가기록물일수록 그 복본이나 복제본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록물 분산보존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하겠다.
 - 8)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는가? <구(舊) 정부기록보존소>는 1998년에 기록관리법을 성안(成案)할 당시, 가칭 ‘국립기록청(미국의 NARA(국립기록관리청)의 개념)이라는 별도기구의 설치를 검토한 바 있다(김재순 2000, 9)’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소위 ‘아이엠에프 체제(IMF 신탁통치)’하에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예산의 축소만을 지향하였던 김대중정부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하여, <정부기록보존소> 위상의 승격은 좌초되고 말았다고 한다. 즉, 당시 이와 관련한 정부의 해당 업무의 관계자들은 “별도기구의 설치는 절대 아니 된다. 만약 별도기구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한다면 아예 단념하라(김재순 2000, 9)”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록관리법의 성안·제정 당시부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승격의 문제는 그 어떤 여지도 없이 좌초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기록관리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의 승격된 기구의 설치에 대한 기획이 무산(霧散)된 상태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본체계를 3권 분립의 질서에 따라 분산보존하되,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기록물의 집중보존의 효과를 보장한다’는 차선책으로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기록관리법을 제정해야 할 시점에서, ‘아이엠에프’라는 그 작은 단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미시적인 현황에서 차선책의 법률이 제정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성수 2003, 174-175).

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의 노력은 그 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2004년 5월말 경 <구 정부기록보존소>에 1개 과(課; 평가분류과)가 증설되면서 <정부기록보존소>의 명칭이 <국가기록원>으로 변경되었다.⁹⁾

3.2 <국가기록원> 위상의 개선 필요성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기록원>은,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의 강화 및 국가기록물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 환경을 조성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아직도 행정부의 '행정 조직 및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역부족의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2급 국장'이 그 기관장직을 수행하는 이른바 하급기관의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기록물관리업무의 중요도에 관한 문제 또한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서무담당의 후순위 업무'라는 개념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13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는 행정부 내의 기록관리 전반의 업무조차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도 벅찬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행정부 내 모든 부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관련한 행정부의 기록관리 고유업무만을 위해서도 지금의 각 과(科)가 국(局)으로 개편되어야 할 만큼 이른바 '1급 국장(관리관) 체제'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국가기록원>이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리법」 제5조 2항에 제시된 7개 사항의 업무를 명실상부하게 수행하고, 또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국가기록물 및 군(軍)·국정원·검찰·경찰 등의 특수기관 등 전국 711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기록물들을 총괄하여 지도·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기록원>의 위상으로서도 도저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전국의 711개 공공기관에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각각의 기록관(광역시도의 지방기록보존소 및

9) <국가기록원>의 기구는 종래 '1소 3과 1지소 1사무소'에서 '1원 4과 1지원 1사무소'로 개편되면서, 각각의 부서 업무분장도 개편되었다. 즉, 종래의 '수집과'가 '수집관리과'와 '평가분류과'로 분리·증설되면서 그 업무가 각각 분장되고, '부산지소'가 '부산지원(행정지원과·보존관리과)'으로 개편되었다.

일반 공공기관의 자료관(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만을 위해서도 최소한 '1국(局) 4-5과' 등의 조직 기구가 전략적으로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현재의 <국가기록원>의 제한된 위상으로 인하여 그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조직기구는 시급하게 대폭적으로 확장·개편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하겠다.

셋째, 현재 <국가기록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2급 국장'이 그 기관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을 주목하고, <국회기록관>¹⁰⁾ 및 <대법원기록관>의 기관장의 직급이 현재 '이사관급(2급)까지 가능'함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산하 행정부 내의 1개 기관인 행정자치부의 동급 국장이 거대한 입법부와 사법부를 각각 대표하는 각각의 기록관(기록보존소)들을 지도·감독할 수 없는 위상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국가의 행정체계적인 지시와 명령 체계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또한 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에 의거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직적·제도적 한계(限界)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기록관리업무의 최상위기관으로서 삼부 즉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 등 국가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통정(統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위상은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승격되지 않으면 아니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 경우, 행정부를 제외한 입법부와 사법부 및 그 산하의 기록관들을 지도·감독하는 데에도 '1국 4과' 체제의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더 소요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은 이미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되었거나 그 승격을 눈앞(目前)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차관급의 기관으로 승격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김성수 2003, 168 참고). 이는 문화관광부 등에서 국가의 문화유물을 비롯하여 기록관련 문화도 부수적으로 함께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것을 모범으로 하여, 비록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행정자치부 내에서 국가의 기록문화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의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에 대한 조처와 배려 또한 당연하면서도 시급하다 하겠다.

10) 현재 입법부의 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기록보존소>라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기관은 <자료관>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들 명칭은 그 기능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학계의 중평(衆評)을 받고 있으므로, 기록관리법의 개정시에는 그 명칭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들 '기록보존소' 또는 '자료관'이라는 명칭을 '기록관'으로 통칭하여 명명하고자 한다.

다섯째, <국가기록원>은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향후에는 국가와 관련한 특별법인(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 등) 및 정부투자기관의 각 <기록관>, 그리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기록물(족보·고문서 등)들과 민간기업 등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이르기 까지, 이른바 이 모든 국가기록물 및 기록관리기관들 및 민간기록물들을 총괄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확장·개편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조직 및 제도가 한시 바빠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¹⁾ 물론 위와 같은 특별법인 등과 민간 기록물에 대한 지도·감독·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별도의 '1국(局) 4과' 체제의 조직과 인력이 더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섯째, 종래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이른바 통치사료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1급)'의 명칭이 '국정기록비서관(1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을 '국정기록'의 개념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기록관리법의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만큼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성수 2003, 162 참조). 게다가 현재 성남에 신축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물 보존서고'¹²⁾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상징적인 독립 건물로 활용하면서, 여기에 이제는 신설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입주시키고, 역대 대통령기록물만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별도의 '1국(局) 1급' 체제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를 고려한다면, 향후 <국가기록원>은 적어도 '4-5개 국(局) 체제의 조직을 완비한 차관급의 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 한시 바빠 승격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1)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1999년에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으나 4년 동안의 유보기간이 있었고, 2004년에 와서야 이 법률이 실행되는 단계에 와 있어서,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향후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총괄하며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기록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자격을 다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기록물을 관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한다.

12) 근래에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만 3천평 규모의 "국가기록물보존서고 건립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11월 24일에 고시하였다. 국가기록물보존서고는 지상6층 지하4층 규모로 2007년 12월까지 <세종연구소> 인근에 조성된다(문화일보, 2004-11-24 참조). 그리하여 2004. 12. 10(금). 14시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1번지, 판교 국제연구교류단지 내에 연면적 18,827평(지하4, 지상6층) 규모로, 총사업비 1,403억원이 소요되는 신축서고 기공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다음 <표 1>의 내용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세계 각국 국가기록관의 위상 및 기록관리 체계 비교

구 분	관 리 체 계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리기관 소속	기관장 위상	교 육 제 도 특 징
중 국	• 행정관리 위원회(국가당안국, 중앙당안관)	국가당안관	국무원	차관급	• 학력교육(정규대학, 방송통신대학) • 계속교육(강좌, 연수)
일 본	• 행정관리 일원화(국립공문서관)	국립공문서관	독립행정법인	국장급	• 학력교육(정규대학) • 계속교육(강좌, 연수)
한 국	• 행정관리 다원화(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각 기록관)	국가기록원	행정자치부	2급 국장	• 학력교육(정규대학원, 단기) • 계속교육(강좌, 연수)
미 국	• 행정관리 일원화(중앙집중)	NARA (국가기록관리청)	독립기관	장관급 (대우)	• 학력교육: 대학원(문헌정보학과 또는 역사학과 설치 대학) • 단기과정
영 국	• 행정관리 일원화(중앙집중)	Public Record Office	대법원	차관급	• 학력교육(런던대학 등 2년과정) • 민간 양성기관
프랑스	• 행정관리 일원화(중앙집중)	Archives Nationales	문화부	국장급	• 학력교육: 고문서학교(대학) 3년과정
독 일	• 행정관리 일원화(중앙집중)	연방기록보존소	내무부	차관급	• 행정직: 전문대학 이상 • 연구직: 역사학 박사학위 대상, 18개월 전문교육과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 선진국들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은 우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NARA)>은 기관장의 위상은 장관급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NARA는 또한 독립기관으로 존속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국·영국·독일의 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장의 위상 또한 차관급임을 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¹³⁾

13)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그 기관의 기관장은 국장급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국으로 세계최고의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조직 장체가 방대하고 그 예산 또한 방대하며, 국가 자체가 <국립기록관>·<국립디지털도서관> 등에 쏟는 정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

셋째로 <표 1>에서 기록관리의 선진국들은 국가기록물을 관장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과 그 본연의 업무를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하고 또 실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의 참여정부 체제에서 국가기록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행정자치부 내에서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최소한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국가기록물의 관리업무가 제도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3.3 <국가기록원>의 기능 및 위상 강화 방안

그렇다면, 이 참여정부에서 현재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록물들이 모름지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집중되고 수집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록관리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즉, 현재 「기록관리법」의 제5조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차관급 기관’으로 명시(明示)하고, 제6조의 각 조항을 조금씩 수정(修訂)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입법부·사법부 및 여타 특수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국가의 모든 공공기록물들을 최상 위기관으로서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집중·수집·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조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그 해당 조항을 각각 조금씩 개정하기만 하여도, 위에서 논급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본래의 기능과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기구를 개편·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입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 일본의 경우, 또한 일반 국민의 각 가문(家門)에 전승되는 기록물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보존의 노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록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이라는 국가는 그 공문서의 보존과 관리에만 충실하여도 될 정도의 국가기록물을 비롯한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에 대한 체제와 네트워크가 국가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 14) 만약 기록관리법의 개정 및 행정부 내 정부조직의 개편 등에서 그 원활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강창일·조성래·최규식 의원 등이 주도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 및 야당 의원들에게도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동참케 하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른바 ‘의원입법’의 방법을 통하여 성사시키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본다.

위와 같이 기록관리법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현재보다 대폭 확장하고 규정하는 방안으로 그 법령이 개정·보완된다면,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등 여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들을 비롯하여 민간기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수집·관리·보존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들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5개 국(局)' 이상으로 확장·편성되는 '차관급 기관'의 조직구조로 자연스럽게 성장·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인정받는 데에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¹⁵⁾

여기서 부가적으로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추가사항이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법에서 16개 광역시도의 <지방기록보존소(기록관)>를 비롯한 전문관리기관(특수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관할 내 지방자치단체” 포함), 대통령기록관 등)의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행 「기록관리법」 제6·7조 등에서 “.....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條文)에 대하여, 이를 권장사항으로 해석하여 ‘법에서의 권장사항은 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각종 기록관들의 설치에 대하여 이른바 권장사항을 ‘강제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역시도 지방기록보존소는 적어도 ‘2급 국장(지방직)’이 그 기관장을 수임하고, 일반 시·군·구의 기록관은 최소한 ‘3급(지방직)’ 공무원이 그 기관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관련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이 수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재정상태가 미약한 지자체라 하더라도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들 지방기록관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계도하여야만 비로소 해당 지자체의 미래에 관한 희망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요컨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한국의 모든 국가기록물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통정(統制·調整)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

15) 당부컨대,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도 행정부의 공공기록물과 함께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수집되고 또 관리·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기록물이다. 따라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관계 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함으로써, 개정된 법령의 효력을 받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삼부(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아래에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16) 이 문제는 제5장. 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 문제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급할 것임.

가기록물의 관리역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가기록물을 현재와 미래의 정보자원으로 구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정보의 활용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 공공기록물을 비롯하여 민간기록물과 해외산재기록물들이 총체적으로 수합(收拾)되고,¹⁷⁾ 이들 기록물들이 기록정보자원으로 구축되어 국가의 지식정보(대국민 정보공개 및 행정·학술자료 등)로 활용될 때 비로소 선진 기록문화이 창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제고가 가장 시급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안이 실현될 때 비로소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기관인 청(廳) 단위의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한다.¹⁹⁾

-
- 17)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들과 해외에 산재하고 있는 한국관련 기록물들에 대한 수합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이들 기록물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또한 강화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국가기록물들을 관리·보존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 18) 위와 같은 위상을 지녀야 할 <국가기록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컨대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NARA)>과 같이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으로 승격될 때 비로소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을 비롯하여 전국 708개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과 아울러 민간의 기록물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총괄하여 지도·관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황은 현재 <국가기록원>이 행정자치부 산하의 이른바 2급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예컨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키라는 주문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면, <국가기록원>을 현재의 행정자치부 산하에 그대로 두되 그 대신 이 기관을 ‘차관급의 기관’으로만 격상시키기만 하더라도, 삼부의 국가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총괄·감독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 19) 이 논문의 제목 각주에서 제시한 ‘2004.11.25의 기록관리 정책세미나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위와 같은 ‘기록관리와 관련한 청(廳) 단위의 차관급 기관 설치 주장’에 대하여, 인하대 김영민 교수와 한양대 임삼진 교수는 “급수를 높이는 것 보다는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며, 위원회 구조가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 조영삼 기록연구사는 “행자부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 승격’ 보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기록정보관리위원회’ 등의 독립적인 형태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처하자”는 요지의 토론도 있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주장들이다. 그런데, 냉정함을 유지하며 좀 더 곰곰이 이 문제를 주시하여 보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직은 한시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의 성격이 강하고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며, 관련 위원회가 해체되었을 경우 그 기록물마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감안해 볼 필요도 있다.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정부의 정식 조직기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국가적인 중요한 업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

둘째, 행정자치부 내에 차관급의 <국가기록청>으로 승격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및 각급 국가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존속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빼어난 기록물관리를 전제(前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그 업무는 행정자치부 내에서, 기록관리 의 고유업무에 관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가기록원의>의 전용 보존서고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하고, 역대 대통령기록물들이 제대로 집중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할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위상은 반드시 승격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²⁰⁾

4.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2004년부터 「기록관리법」이 전방위(全方位)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의 708개 공공기관에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기록관(자료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록관을 제대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적시·적소에 배치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기록물의 분류·정리 및 관리와 이용·정보봉사에 요구되는 문헌정보학적인 지식, ② 기록물의 수집·평가 등과 관련한 지식, ③ 종이기록물의 보존과 복원 등과 관련한 지식, ④ 종이기록물 등의 열화를 방지 및 소독과 살균 등과 관련한 지식, ⑤ 최근 기록물의 디지털화 내지 매체수록 및

조직 보다는, 국가기록물의 천년대계를 위해서는 보다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정부의 정식기관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20)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가 현재 보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수량이 극히 빈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보존서고를 건축하여 보존하면서, 전시관도 또한 마련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관리법에 의하여, 현재의 대통령부터는 임기 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이 대량으로 수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신축되는 보존서고 및 전시관의 규모를 장기적 안목에서 확장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념관>도 현재 <국가기록원>이 구상하고 있는 신축 보존서고의 건물 내에 함께 입주하여야 하며, <국가기록원>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충 및 조직기구의 확충이 요구된다.

전산화와 관련한 지식 등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위와 같이 기록관리업무에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록관리법」 제25조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은 ‘①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은 ‘②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사항 등을 현행법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40조 1항을 정리하면, ‘①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②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검정총장·육해공군의 각 참모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각각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①과 ②의 각 호는 석사학위 이상으로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제③에는 그 어떤 학력이나 학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사항에서는 학력이나 학위의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²¹⁾ 따라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사항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일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는 인원의 규모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 4분의 1 이상(1/4 미만일 때에는 1인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21) 게다가 이러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예컨대 군의 사병(士兵)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이 단기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관리의 실무에 투입되고, 그 업무를 지시하는 기록물관리자 또한 기록관리에 대한 일정수준의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문제는 한 층 더 심각해짐이 자명하다.

22) 이와 같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기록관(자료관) 등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기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① 중앙행정기관은 2004년말까지, ②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말까지, ③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2008년말까지, ④ 기타 공공기관은 2010년말까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그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위의 경과 조치에서 명시한 시한까지 각 기록물관리기관에 필요한 인력의 1/4 이상씩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기록관리 전문인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현행 기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규정 문제

위의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기록관리법」과 그 시행령 전체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시행령 제37조의 기록물의 폐기 조항에서 제1항인 ‘①기록물이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는 조항만이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업무의 규정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²³⁾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의 문제

이미 논급하였다시피, 위 「기록관리법」 시행령의 제40조 1항 및 2항에서는 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역사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의 제40조 2항에서는 그 어떤 학력제한도 두지 않고, 다만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일정교육만 이수하면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조항에서 이른바 같은 법의 시행령 내에서도 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학력의 구비조건에서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연구직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가 지원할 수 있고, 일반직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

23)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법 개정시에는 기록물관리에 소요되는 전체 인원이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배치되도록 조처하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도 있다.

방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기록관리법」에서만 석사학위 이상으로 지나치게 그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기록관리법에는, 현재 일선의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全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²⁴⁾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문제점 해결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두 가지 방안으로 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제1의 방안’은 현재의 기록관리법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면서 개정하는 방안이며, ‘제2의 방안’은 현재보다 그 문호를 보다 개방하면서 다양한 전공 이수자들에 대하여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지식에 대한 일정교육 및 자격시험 등을 거쳐서 채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1) 제1의 방안

현재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의 조항 등은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에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의 별도 조항을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사항으로 추가하자는 방안이다.²⁵⁾ 왜냐하면, 다양한 기록관리업무의 실제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양성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의 고학력자들은 보다 상위 직급(예컨대 6급 공무원)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을 실무책임자로 삼고,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이보다 한두 단계 낮은 직급의 기록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무자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 확보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책은 한결 더 수월해 진다고 볼 수 있다.

24)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특정기관에서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특정인이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직원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학력을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5) 물론 고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로서 소수의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상존(常存)한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망하여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의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양하고 많은 기록관리 실무자의 양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 '기록관리학전공'의 학사학위 수여자가 이미 배출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 대학교에 산재하는 '문헌정보학과(전공; 또는 역사학과(전공))'에서 그 전공을 세분하여 '기록관리학과(전공)'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⁶⁾

위와 같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양성·교육하자고 제안하는 취지는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여 각종 기록관에 '1명 이상'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708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 등)들과 주요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기록관에 배치되어야 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약 2,500-3,000명(6급 공무원, 연구사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²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에서는 처음에는 전문인력 대 비전문인력이 반반씩 차지하는 경향이었으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진입하려고 준비한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도서관에는 차츰 전문인력만으로 충원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기록관리의 현행법에서는 '기록관 소요인력의 1/4 수준에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 만약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72학점'씩 수강하여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배출된다면, 이들을 기록관리 현장의 기록관리 각종 업무의 실무자(8-9급 공무원 수준)로 배치할 경우 현행법보다 약 3배 이상의 실무 전문인력(9,000명)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록관리의 5개 영역 등의 광범위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문제가 보다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현행법에서 배치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과 비슷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급공무원(예컨대, 8-9급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기록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26) 이는, 문헌정보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보자료 속에 기록관리학의 주요 대상인 기록자료도 또한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 현행 교과목에 '기록물분류법'·'기록물의 평가'·'기록보존론'·'전자기록물관리' 등 기록관리학 전문과목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별도의 기록관리학전공(학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수립한다면, 기록관리학의 학사학위 또는 복수전공의 이수 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수진 및 관련 교과목의 개설의 경우,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응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7) 이 수치는 <국가기록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기록관리 소요 전문인력을 추산한 것임.

방법도 될 것이다.²⁸⁾

3-2) 제2의 방안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 2>에서 제안하는 여러 자격요건에 입각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문호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대학교의 각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자가 대학원 교육이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관리 현장에 투입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5대 영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화학·제지학·컴퓨터공학·행정학·문화재보존학 등 대학교의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자들이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거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기록관리의 다양한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들은 <표 2>의 일정한 자격요건에 입각하여 소정의 자격시험(예컨대 ‘중앙인사위원회’의 임용시험 등)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에 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6급 공무원’ 또는 ‘8급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무엇보다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대상 업무의 규정 및 구체적인 자격구분의 문제’는, 현재 한국기록관리협회 김태수 회장이 제안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구분”이라는 부분의 논문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김태수 2002b, 1-5). 그리고 이 제안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필자의 논고 일부분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김성수 2003, 178-181). 이들 제안의 주안점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28) 그러나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과(또는 전공)를 신설한다면,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예상 수요와 대학교에서의 전문인력 공급의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와 협력하여, 현재까지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전공 또는 협동과정을 개설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에 국한하여, 그 학부에 기록관리학과(또는 전공)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표 2>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안)²⁹⁾

자 격	자 격 요 건
1급 기록관리사	1. 기록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각종 기록관리기관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각종 기록관리기관에서 9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급 기록관리사	1.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문헌정보학 또는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록관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표 2>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안)은 기록관리의 전문인력을 ‘1급 기록관리사’와 ‘2급 기록관리사’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서 더욱 구체적인 전문 자격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자격구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으로 규정된 학위자격 기준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으로 그 학위기준을 하향하면서 아울러 그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표 2>에서 제안한 자격요건에서의 큰 특징은, 현재 일선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록관리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조치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기록관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기존의 문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29) 이 표는, (김태수, 2002b,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구분”, <제4회 기록물관리 보존 워크샵>, 서울: 한국기록관리협회, p5.)의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임.

30) ‘기존의 문서담당 공무원들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되고자 한다면,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주자’는 의견도 있다. 물론 그럴 때만이 기록관리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서 기록관리학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현직 종사자들을 포용하며 함께 가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기록관리의 전문지식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사기 양양 및 승진에 대한 성취감도 함께 수반시키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안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중시하면서 아울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기록관리 전문인력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채용방법 및 직제 방안

현행 기록관리법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반영시켜, 50개 중앙부처에서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임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현행 기록관리법으로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임용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장에 배치할 경우, 이를 국가공무원법에 반영한다면, 연구직/학예직렬에만 전문요원의 배치·임용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그 응용력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직렬(예컨대, 기록관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³¹⁾

만약, 기록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위 <표 2>에서 제안한 자격요건 등을 고려·채택한다면,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대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기록관리직렬’에서 각종 직류로 다양한 전공자를 임용하고, 이들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주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본다.³²⁾ 그런데 연구직종은 그 직급이 단지 연구관(1-5급)과 연구사

31) 실제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연구직’에 ‘기록관리직렬’을 신설하고, ‘6급 연구사’ 직급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임용시험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방안 중 타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의 개정 때에는 또 다른 채용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대구분으로 ‘직종’이 명시되고, 이 직종에서 ‘일반직·연구직·기능직·지도직’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직종의 하위단위로 ‘직군’이 명시되어 있고, 이 직군 아래에 각각의 ‘직렬’이 명시되며, 직렬 아래에 다수의 ‘직류’가 명시된다. 예컨대, 현재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일반직종/행정직군/사서직렬’로 임용이 된다. 또한 역사학과 출신들은 ‘연구직종/학예직군/학예연구직렬’로 임용이 되며, 컨서베이터로 근무하는 화학과·제지학과 등의 출신들은 ‘연구직종/공업연구직군/공업연구직렬’ 등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부터는 현행 기록관리법으로 사서직렬이나 공업직렬로써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록관리 전문직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일반직종/행정직군/기록관리직렬’의 신설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직종/학예직군/기록관리연구직렬의 신설 방안을 상정하여 볼 수도 있다. 그밖에 이공분야는 ‘일반직에서 정보통신직군/전산직렬’, ‘연구직에서 과학기술연구직군/공업(및 보건)연구직렬’ 등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의 방안으로써, 일반직이나 연구직을 막론하고 각 직군 아

(6-7급)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일반직의 9단계에 비해 승진 등에 대한 불만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³³⁾ 또한 최근 우리나라 행정부 등에서,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즉,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될 고위공무원단(현 1-3급) 제도 도입을 고려한다면, 기록관리직의 1-3급은 통합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최근 윤희운 교수 등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사서직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탁받아 12월초에 그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윤희운 등 2004).

위 윤희운 등이 발표한 연구의 핵심적인 개선방안 중 제3안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계를 비롯한 기록문화를 취급하는 박물관·미술관·문서관 계의 인식전환과 견고한 연대를 필요로 하는, 파격적인 개선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즉, 그 골자는 현재 ①행정직군에 예속된 사서직렬, ②연구직 내의 학예직군, ③그리고 아직 그 직제가 확립되지 않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이 3개의 직렬 및 직운을 하나로 묶어서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요컨대, 지식정보 내지 지적(知的) 문화유산을 취급하는 직종을 군집하여 독립직군으로 신설하고, 그 아래에 3개의 직렬(문헌정보, 학예, 기록관리)로 구성하는 방안이다(윤희운 2004,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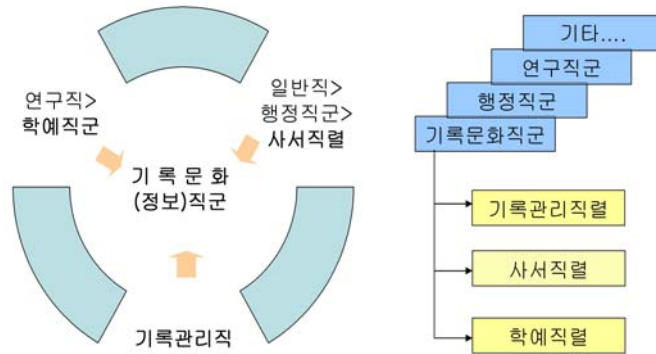
위와 같은 기록문화직군의 신설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래에 ‘기록관리직렬’을 두고, 그 아래에 그 직류를 세분하여 예컨대 ‘①기록물의 분류와 정리 및 관리와 정보봉사를 위한 기록관리직류, ②기록물의 수집 및 평가를 위한 기록평가직류, ③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메세추록 등을 위한 기록보존직류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른바 각 직군에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대상업무를 유형화시켜서 그 직류를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직렬과 직류가 신설되려면 기록관리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수요가 우선적으로 많아야 비로소 그 직렬과 직류가 각각 신설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직렬이나 직류의 신설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면, 행정자치부의 직제에 기록관리직의 직군이나 직렬을 우선적으로 삽입·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관(자료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 내에서 그 기능에 적합한 직렬의 신설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하여 그 해결을 위한 미봉책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한 장기 포석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에 지적하여 둔다.

33) 이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기록관리직군의 단독설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정부 공무원 직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직군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수 있다. ② 연구직의 경우 계급 및 직급이 단지 ‘연구관’과 ‘연구사’로만 되어 있어 일반직의 9단계에 비해 승진 등에 있어 불만요소가 크다고 한다. 따라서 직군을 설치하거나 다른 직군에 ‘기록관리직렬’을 설치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기록문화직군 신설 개념도

위 윤희윤 등의 연구의 기저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중국·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각국의 표준직업분류상 ‘사서직·학예직·기록관리직’은 동일한 분류항목에 군집되어 있으며, 각국의 정부조직 및 관련기구에서도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유산국·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밀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윤희윤 등 2004, 200-205)고 주장하고 있다.

위 연구의 핵심은 기록관리와 관련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전문직 인력들을 하나의 직군으로 군집하여 ‘기록문화직군’으로 신설할 경우, 국가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이용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에도 아주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유사 직군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행정직과의 차별성 부각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기록문화/정보를 담당하는 전문 직렬 사이의 협력과 결속력 강화로 각 기관의 성과 부각에도 기여함으로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³⁴⁾

34) 물론 이러한 방안에는, ① 직군 내 직렬/직류 구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② 기존의 학예직군과 사서직렬의 협의와 동의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 ③ 신설되는 직군의 계급체계 및 직급(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행정직군의 9단계 계급/직급체계를 따르되, 직급명칭은 연구직 또는 전문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계급/직급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경우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될 고위공무원단(현 1-3급) 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1-3급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제안의 개념을 현행 행정직 등의 직급 및 자격요건 등을 통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현행 행정직 등의 직급 및 자격요건 등의 개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급/직급(명칭)									
행정직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기록문화직*	기록문화관리관			기록문화서기관	기록문화사무관	기록문화사			
현행 자격요건 및 제안(기록관리직)**									
기록관리직	현재 자격요건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1급기록관리사***		2급기록관리사		
학예직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준학예사		
사서직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 '기록문화직'의 계급과 직급명칭은 임의로 부여한 것임.

** '자격요건'은 해당 자격요건과 계급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

*** 기록관리직의 경우 자격요건이 세분화되지 않고 있으나, <표 2>의 제안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요컨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의 문제는, 기록관리법의 개정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유념되고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학력제한을 완화하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조정하면서 그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제도를 갖추고(<표 2> 참조), 현재 기록관리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그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을 전문인력으로 계속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문헌정보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기록문화직군'을 신설하여, 현재의

‘학예직’과 ‘사서직’ 그리고 ‘기록관리직’의 독립직군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발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5. 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 문제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기록관)>은 공공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도를 비롯한 각 시·군·구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등에서 기록물을 관장(官掌)하는 기본단위로서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기록관리법」의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하여 그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록관은, 기록관의 일반적인 업무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하는 ‘자료관 운영의 표준 지침’이나 ‘자료관시스템’에 의거하여 그대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의 특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지칭하는 ‘자료관’이라는 명칭은 16개 광역시도와 각 시·군·구 등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거나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³⁵⁾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관의 명칭을 예컨대 ‘○○군 기록관’·‘○○시 기록관’ 등으로 지칭될 수 있도록 개정할 때,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진입한 지금의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각 지방의 세대 전승(傳承)의 단절로 인하여 향토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난 지 이미 오래 이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기록과 문화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 및 우리의 전통사상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표류하면서 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보편성과 통일성을 연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승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방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정보의 소멸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리하여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의 지정 사례와 같이, ‘우리 지방에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

3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들을 비롯하여 그 지방에 전승(傳承)되는 모든 문화적 산물(産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시 한 번 더 유념하여 ‘각 지방에서 전승·보존하여야 할 기록정보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들 기록유산들을 전시·홍보하고 그 지방 주민들을 교육하고, 나아가 그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른바 ‘기록박물관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발전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현행 기록관리법에는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기록유산들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 내지는 ‘홍보관’ 또는 이른바 ‘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에 대한 그 어떠한 규정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의 개정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야 할 <기록관> 내에 가칭 ‘기록박물관전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³⁶⁾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 그 지자체 특유의 <기록박물관전시관>을 설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과 이익이 따를 것이다.

총래 「○○郡誌」·「○○市史」·「○○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道誌 시리즈」 등의 무수한 기록물들은 단지 기억의 한 수단으로써 과거에 관한 추억만 담긴 죽은 자료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살아 움직이는 기록정보로 전환되어야만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시점에서, 그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서 연계함과 동시에 이러한 소중한 기록정보들을 전시·공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교육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 절실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 및 그 지자체의 핵심역량이 과연 무엇인가?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지방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방의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보성군 녹차기록관> 등과 같이,³⁷⁾ 해당 지방의 특성화된 관련 기록정보 뿐만 아

36) ‘기록관의 설치와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록박물관전시관의 별도 설치의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방의 기록관을 보더라도 반드시 전시관이 마련되어 방문객의 교육과 홍보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록관의 설치 시작단계에서부터, 각 지방 고유기록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록박물관전시관 설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37) 그밖에 <담양군 정원기록관>·<밀양군·정선군 아리랑기록관>·<나주시 배(과일)기록관>·<한산군 모시

나라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련 해당 모든 기록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들 기록정보들이 해당 기록박물관전시관에서 제공될 때, 비로소 그 기록관은 특성화되고 여타의 기록관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기록관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해당 기록관이 교육의 장 및 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함으로써 해당 지방의 재정수입의 극대화도 또한 병행하여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그리하여 특성화된 각 기록관에서 관련 모든 기록정보(자료)들을 기록관 현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인지(認知)케 하고 이 같은 몇 개의 기록관 및 관련기업 등이 연합한다면, 3박4일 일정의 훌륭한 테마 순회투어(tour)로써의 시각 등 육감의 체험학습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향후, 설립되는 각 지방의 기록관은 ‘문화·관광 정보자원으로서의 기록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기록관은 해당 지방 관광산업의 선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광·문화자원은 현재와 미래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의 <기록관>은 진일보하여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을 판매하는 종합적인 사업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⁹⁾

<기록관>·<안성시 안성맞춤(鑪器) 기록관>·<괴산군 고추기록관>·<단양군 동굴·마늘기록관>·<이천군 도자기기록관>·<함평군 나비기록관>·<보령시 머드기록관>·<청원군 생명쌀기록관>·<부천시 에니메이션기록관> 등의 특성화된 기록관의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38) 만약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의 능력과 재력(財力) 및 그 아이템의 설정이 미흡하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그 특성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도자기 산업과 문화가 발전된 경기도의 광주군과 이천군 및 여주군 3개군이 연합 또는 연계하여 <도자기기록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제3의 방법으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독특한 기록관을 건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이용자(관광객)들이 이들 기록관을 차례로 순례하는 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제주도의 경우,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제주도 화산·오름 기록관>·<제주시 하루방기록관>·<서귀포시 감귤기록관>·<성산시 분화구 기록관>의 기록박물관전시관을 순례하면서 그밖의 명승지도 함께 관광할 수 있는 2박3일 일정의 방안을 개발한다면, 하나의 훌륭한 테마(theme)여행의 코스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경제적 수입도 배가될 것이다.

39) 각 지방의 전통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테마(주제)가 확립된 관광(투어)을 기획한다면, 기록관은 건강·패션·요리·음악·영화·공연·스포츠와 게임 등도 아울러서 종합오락장 내지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상세계 등 다목적 체험장의 역할과 동시에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4년 이후의 주5일근무제 및 각종 휴가 중에 기록관이용자(관광객)가 해당지방에 일단 진입하기만 하면, 그 지방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에 의하여 적어도 1일 이상(1박2일 또는 2박3일)의 일정으로 그 지방에서 머물며 직접 체험 교육·관광 및 휴식과 투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기록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 지방의 기록정보에 의하여 그 지방 특유의 ① 볼거리, ② 먹을거리, ③ 체험학습거리, ④ 사갈거리, ⑤ 놀이거리, ⑥ 휴식거리 등이 연계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년중 특정기간 특별이벤트 또는 년중 이용가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의 기록관에서는 해당 지방의 문화·예술·관광명승지(명승고적·자연)·역사·자연환경·종교(사찰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 설립에 있어서 해당 '기록박물관전시관'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군(郡) 단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설치된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 기록박물관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박물관·전통기록도서관·미술관·문화원' 등의 역할도 함께 병행하게 하고,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모든 문화유물 등의 실물(복제)전시 및 비디오(멀티화면)·사진·오디오·다큐멘터리(멀티 동영상·영화) 상영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전시관·상영관을 마련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기록관이 손수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문화·역사·명승고적·박물관·미술관적 요소 등 총체적인 기록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록관리와 관련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맞춤형정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방의 관련 기록물과 여타의 문화정보를 총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의 개념을 '전통'의 개념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각 지방에 산재한 모든 기록정보를 현재에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문화·정보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기록관리법의 개정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의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또한 그 기록관은 필수적으로 특성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기록관> 내에 가칭 '기록박물관전시관'을 설치 또한 의무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록박물관전시관>을 해당 지자체의 홍보 및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 미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과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6. 결론

국가기록이 방치되고, 역사의 흔적이 지워지면서 과거 우리 민족의 찬란한 기록유산마저 퇴색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민속·인물·각종 통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정보자원을 문화·관광산업 자원(도로·숙박시설·음식점·공원·사찰·야영장 등)과 연계시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기록관의 홈페이지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수익사업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즉 배너광고, 문화·관광산업 DB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업소가 광고비를 많이 내는 순서대로 우선안내시스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 때 해당 지방의 관공소 및 기록관에서는 해당 업소를 방문 조사하여 위생 및 등급을 먼저 부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기록유산의 정리와 보존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현재 우리는 어떠한 기록유산들을 전승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현재 과연 이러한 물음에 부응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제, 위와 같은 관점에 유의하면서,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은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구 내에서 그 위상이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구체적으로, 기록관리의 선진국들과 비교하고 우리의 현황을 감안하여,

1)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인 청(廳) 단위의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한다.

2) 차관급의 <국가기록청>으로 승격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및 각급 국가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존속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빼어난 기록물관리를 전제(前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그 업무는 행정자치부 내에서, 기록관리의 고유업무에 관한 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 <국가기록원>의 전용 보존서고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하고, 역대 대통령기록물들이 제대로 집중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할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위상은 반드시 승격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사항을 비롯하여,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업무 및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서는

1) 현재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양성·교육함으로써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향후 10년 동안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최소한 2,500-3,000명(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6급 연구직)에 달하는 고급인력의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보다

약 3배에 달하는 실질적인 기록관리업무를 위한 저변확대에 의한 기록관리 실무자(9급 기록관리직)의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었다.

2) 보다 다양한 학문주제를 배경으로 하는 기록관리 실무자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표 2>와 같이 완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을 위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3) 차후 기록관리법의 개정시에는,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고, 이 직군 아래에 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열과 직류로 각종 전공자를 임용함으로써, 이들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에 대한 효율화 및 승진에 관한 성취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4) 최근 문헌정보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기록문화직군'을 신설하여, 현재의 '학예직'과 '사서직' 그리고 '기록관리직'의 독립직군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발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관전시관>의 설치의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록관에서 해당 지자체의 독특한 역사와 현재의 업적 및 미래의 전망(vision)을 신설되는 기록박물관전시관을 통하여 전시·홍보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모든 기록정보와 자원들을 현재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육·문화·정보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재정수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 기록관리 업무는 이제 2004년부터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라 볼 수 있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때의 폐해는 계속 지속되는 폐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당부컨대, 기록관리법의 개정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입법·법 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시행착오는 이제는 결코 더 이상 거

듭되는 경우가 용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관리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바람직한 개정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정부 당국의 솔선수범에 의한 <국가기록원>의 위상 정립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199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법률 제5,709호).
- 행정자치부. 1999. 기록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
- 행정자치부. 1999.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8호).
- 정부기록보존소. 2002a. 자료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자료관운영 담당공무원 Workshop 자료집. 2002.11.28.
- 정부기록보존소. 2002b.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설명회. 자료관운영 담당공무원 Workshop 자료집 별책. 2002.11.28.
- 정부기록보존소. 200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 개정추진 현황보고.
- 국가기록원. 2004. 11. 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추진 경과 및 임용시험과목(안) 검토 보고.
- 곽건홍. 2001. "자료관 현황과 발전전략." 기록보존(<국가기록원> 기관지) 제14호. 49-67.
- 김성수. 2002. "한국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중·장기 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25집(2002. 8): 25-50.
- 김성수·서혜란. 2002.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국가기록원>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2002. 3): 41-66.
- 김성수. 2003. "국가기록물관리의 현황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3권 제1호(2003. 3): 159-184.
- 김성수. 2004. "기록관리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국가기록관리의 성과와 개선방안」. 강창일·조성래·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2004. 11. 25(木).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개최) 발제 자료. 13-30.
- 김재순. 2000. "기록물관리법 시행현황과 정책방향." 기록보존 제13호. 7-17.
- 김태수. 2002a.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 제1호(2002.3): 7-39.
- 김태수. 2002b.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구분." <제4회 기록물관리보존 워크샵>. 서울: 한국기록관리협회: 1-5.
- 남효채. 2000. "한국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3): 19-36.
- 박지태. 2000. "자료관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보존 제13호. 49-79.
- 윤희운 등. 2004. 사서직제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영남. 2000.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록보존 제13호. 19-47.
- 최정태·윤송원. 2000.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3): 95-130.
- 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이세아문화사.
- 한상완. 2000. "한국기록관리학의 현황과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록관리학 발전방안과 미래. (2000.7.4.).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 1-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3): 9-18.
- 한상완·김성수. 2002a. "한국의 기록보존 현황과 발전방향."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 기록매체의 보존관리(2002.7.3.-7.5.).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 11-14; 167-176.
- 한상완·김성수. 2002b. "한국 기록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2호(2002.9): 1-37.
- 한상완·김성수·윤대현. 2001.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관리 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3): 131-152.
- 한상완·김태수·김성수·윤대현 외. 2002.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 관리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한국기록관리협회.